

평창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34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24년 3월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개정*에 따라, 관계 법령에서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평창군의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*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주요 개정내용
: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출자·출연기관까지 확대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(안 제3조)
- 군수의 지도·감독(안 제4조)
-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(안 제5조)
- 시행규칙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붙임1”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“붙임2”,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7. 23. ~ 2024. 8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4-1005호, 행정담당관-2356(2024. 7. 23.)호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217(2024. 7. 18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1217(2024. 7. 18.)호]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3301(2024. 7. 22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2918(2024. 8. 19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4934(2024. 9. 26.)호]

평창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평창군의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이버공격·위협”이란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, 서비스거부(DDoS: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),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·교란·마비·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·변조·훼손·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.
2. “사이버보안 업무”란 사이버공격·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)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 2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평창군이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

제4조(군수의 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출자·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군수는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·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 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)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.

1.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
2.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·시행
3.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
4.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
5. 사이버보안 교육
6. 사이버공격·위협 대응 훈련
7. 자체 진단·점검
8.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
9. 보안관계
10. 사고대응
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평창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
12.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

제6조(시행규칙)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,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

군수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국가정보원법」

제4조(직무)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 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제5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·고시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(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자치단체의 장[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이하 같다]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.

1. 출자·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: 신규 지정
2.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·폐지·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·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: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

□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(대통령령 제34287호)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의2(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·조정)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(이하 “사이버안보정보 업무”라 한다)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**사이버보안 업무(이하 “사이버보안 업무”라 한다)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,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**

1.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
2. **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**
3. **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·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보안대책**

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,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.

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2의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. 다만,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·협회는 제외한다.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·공립 학교
5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

제8조(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·시행)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□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 (국가정보원 지침)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각급기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·조정
2.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·시행
3. 「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·조정규정」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
4.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
5.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제3항에 따른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
6. 「정보통신기반보호법」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·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
7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
8. 「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“**각급기관**”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, 공공기관, 국·공립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·공립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군(軍)기관을 말한다.

제4조(책무) ① **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(업무자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.**

-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.

□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(계속)

제5조(정보보안담당관 운영)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)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.

1. 정보보안 정책·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·개정
2.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,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
3.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
4. 정보통신실,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
5.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
6.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
7. 보안관제,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
8.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‘사이버보안진단의 날’ 계획 수립·시행
9.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
10.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
11.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
12.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

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, 인력(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% 이상) 및 예산(정보화 예산 대비 15% 이상)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9조(지방출자·출연기관 지도·감독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보안업무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1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권혁수
연락처	(033) 330 - 2210